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7일)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군종법사 결혼 인정 독신 조항 흔들리나

## [이슈] 고법 혼인 군종법사 복무적합 판결 여파

노덕현 · 윤호섭 기자

혼인을 한 군종법사도 현역복무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군승 독신을 명시하고 있는 조계종 외 타종단 승적 군종법사 활동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예외조항 삭제 10년을 맞은 군승 독신제도가 덩달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2월 25일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계종 승적을 가졌던 김모 씨는 2005년 임관해 해군에서 군종법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 12월 여자친구와 혼인했다. 조계종은 2015년 3월 김모 씨가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했다.

이후 김모 씨는 혼인이 가능한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해 군종법사 직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국방부는 파송 주체인 조계종 소속이 아닌 이유로 2017년 4월 김모 씨를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 7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모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조계종 규율만을 위반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김모 씨가 2008년 12월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 종헌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종헌 제9조 3항에 있던 군승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삭제 전 혼인한 군종장교에게만 승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2월 2001년도에 임관한 군법사의 유사 사례에 대해 국방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2017년 4월 열린 대중공사에서는 현역 군종법사 중 110명이 비구 군승이며, 23명이 가족이 있는 법사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중공사에서는 전역한 군법사 260여 명이 결혼으로 인해 조계종 승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법사는 "결혼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도 비구승의 길을 택한 군법사들이 많았다. 이번 사례가 해당되는 군법사는 일부"라면서도 "일부라도 이들 또한 일원이다. 현재 비구 군승 중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승적을 옮겨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군종법사가 조계종 비구승이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비구승으로 서원을 세웠지만 속퇴하는 이들이 있듯이 비구 군승 중에서도 생각이 바뀌는 이들이 있다"며 "이와 함께 출가자 감소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군법사 수급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비구군승으로 정체성을 세운지 10년이 됐다. 군종포교사 등 보완하는 방안을 조계종단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계종헌 위반, 승적 제적**
**태고종 승적, 복무적합판결**
**비구 군승 10년 만에 타격**

**국방부 불복 대법원에 항소**
**"군종교구 무시 판결" 비판**

현재 국방부 측은 대법원 상고했으며 상고심은 3월 28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군종교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 최종판결도 고법 판결과 같다면, 종단 차원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종단이 청정비구로 군종제도를 구성하려는 방침은 변경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군승 독신 예외조항 삭제를 대표발의한 주경 스님은 "법원 판결이 폭넓게 해석된 것 같다. 하지만 군승제도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파견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증을 맡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인물의 파견철회 권한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담당기관이 보증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이유가 사라진다. 보증인 자격을 무시한 판결로 이해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꽃공양** 다시 봄이다. 추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꽃들이 돋는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뭇가지가 있어 꽃은 핀다. 추운 겨울을 견딘 것이 어디 꽃나무뿐일까. 우리 모두가 겨울을 견디었다. 이제 우리 모두 봄을 맞는다. 불보사찰 통도사 마당에도 봄이다. 극락보전 마당에 홍매화 향기 가득하니 '극락'이 아닐 수 없다. 세상 모든 것들이 '까닭'인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많고 많은 자리 중에 불보 자리에 핀 꽃이라. 이보다 더한 꽃공양이 있을까.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 10.27법난기념관 봉은사로 변경 추진

## 조계종 종무회의서 결의… 문체부에 부지 변경 요청

**토지매입 문제 해결 위해**
**치유센터는 개운사로 분리**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이 부지를 서울 봉은사와 개운사로 옮겨 추진된다. 정부에서 조계종의 부지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념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중앙종무기관 종무회의서 10.27법난기념관 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로 변경하는 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조계종이 10.27법난기념관 건립부지를 변경한 데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조계사 인근에 추진되던 건립사업에는 약 20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업예정지에 근대문화재가 있는 데다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매입비를 요구하면서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매입 토지의 국가 기부채납 문제도 얽혀 현재까지 조계종이 매입한 부지는 4필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불용예산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252억 원으로 편성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을 올해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년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조계종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사업부지 변경이다.

종단불사추진위에 따르면 기념관은 봉은사 주차장, 치유센터는 개운사 옆 승가원 법인사무국 건물 부지에 짓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정했다.

남은 절차는 문체부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사와 기획재정부 협의다. 기재부의 예산 재편성 등이 이뤄지면 조계종은 본격적인 기념관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재 봉은사가 주차장에 대법륜전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어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10.27기념관을 봉은사에 짓기로 종단과 협의했다. 대법륜전 불사가 불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념관과 성격이 비슷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부지 성격상 층고를 높이 올릴 수 없어 지하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관련 종사자 1900여 명을 강제 연행해 고문을 자행하고, 전국 사찰 및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사 출가열반정진주간 선포 승보공양 A5 | 성태용 명예교수의 '서유기의 불교적 수행세계' A7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안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daehaeng.org
이메일 ds7788@hanmaum.org
전화 031) 470-3276, 3277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1 제2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 선정 분야 대상 1명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2 묘공학술장학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3 제3회 계절발표회
- 시간 | 2019.03.16.(토) 13:30 ~ 17:3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논 제 | 발 표 | 논 평 |
|---|---|---|
| 대행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 황금연(경희대) | 김응철(중앙승가대), 서재영(동국대) |
|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 혜원스님(동국대),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4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투고 시기 | 연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한마음연구》 게재 확정시)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